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5 2016년 2월 25일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1월 26일, 송재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년 12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재형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제14호)
-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제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비용추계 비대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에 따른 용어 정의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를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이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관계 법 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페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u>매년 1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u>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u>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u>제출하여야 한다.</u>

-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수정안 요지
-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
-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915

제안년월일: 2016년 2월 25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 (안 제2조 제14호~제15호)

3. 참고사항: 생 략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14. "신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정의)	이 조현	데에서 사용	제2조(정의)	이 조	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다.			다.		
1. ~13. (생 략)	1. ~ 13.	(현행고	나 같음)	1. ~ 13.	(개정약	안과 같음)
14.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14. "신·재/	생에너	지"란 기존	14. "신에너	지"란	「신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	의 화석연료	를 변혼	<u> </u>	및 재생에너>	지 개빛	<u>날·이용·보급</u>
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를 말	한다.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재생가능한	에너	지를 변환			
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시켜 이용하	나는 여	<u>게너지로서</u>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신에너지	및 :	재생에너지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를	<u>2</u> 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말한다.	및 같은 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	너지를	<u>말한다.</u>			
				15. "재생에	<u>너지"</u> i	<u>란 「신에너</u>
				기 및 재생이	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u>따른 에너지</u>	를 말	<u>한다.</u>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	제17조(에너	지 절	약 및 온실	제17조(에너	지 절	약 및 온실
가스 감축목표 설정)	가스 감축목.	표 설정	d)	가스 감축목.	표 설기	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고	ㅏ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② 시장은 저]] 항에	따라 다음	② (개정안괴	- 같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u>다음</u>	각 호의 사형	당을 포	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연도 온실가?	느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절약에 관한	목표달	발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			
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까지 , 이행결		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 종합정보센터](이하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		· · · · · · · · · · · · · · · · · · ·			
			- 같음)	1. ~ 5. (개정인	<u></u> 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신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15. "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다음"을 "해당"으로, "12월 말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14.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	에너지를 말한다.				
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17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설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을 포함한 <u>다음</u>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사항을 포함한 <u>해당</u>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매년 <u>12월 말까지</u> , 이행결과보고	계획을 매년 <u>1월 31일까지</u> , 이행결과보고				
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	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전자적 방식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